

●환경부고시 제2024-100호

「먹는물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환경부장관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디스켓”을 “전자적 기록매체”로, “수질·수량 측정결과를”을 “지하수 관련 수위·수량·수질 측정결과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등을”로 한다.

제3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지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정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6.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제4조제1호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 수량 및 수질 측정자료의 수집 및 저장”을 “시·도지사가 분석을 의뢰한 지하수 관련 수위·수량·수질 측정결과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정리”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별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량·수질 측정자료의 수집”을 “제출된 측정결과의 기기 오류 등에 따른 이상 유무의 확인”으로 한다.

제4조제1호나목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별, 취수정별, 감시정별 수량·수질 측정 및 전송 또는 제출자료의 기록·저장”을 “취수정 등의 수위·수량·수질 측정결과의 정리·분석. 단, 측정항목별로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의 측정값을 산술 평균할 수 있음”으로 한다.

제4조제1호다목부터 라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감시정 등의 수위·수량·수질 측정결과의 정리·분석. 단, 측정항목별로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의 측정값을 산술 평균할 수 있음
- 라.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수집한 자료

제4조제2호 중 “측정자료의 분석”을 “지하수 수위·수량·수질 측정결과의 분석 방법 및 결과 해석”으로 한다.

제4조제2호가목 중 “취수정의 수량·수질 측정자료의 분석. 단, 각 취수정에서 전송 또는 제출된 자료는 취수량과 수위에 대하여 분석하고 분석방법은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에서

측정된 값을 산술 평균함”을 “지하수 수위·수량·수질 측정결과와 시계열(또는 추세) 분석”으로 한다.

제4조제2호나목 중 “감시정의 수량·수질 측정자료의 분석. 단, 감시정에서 전송 또는 제출된 자료의 분석은 수위, 전기전도도, 온도, 수소이온농도에 대하여 분석하고 자료의 분석방법은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측정기에서 측정된 값을 산술 평균함”을 “지하수 수위·수량·수질 측정결과 및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수집한 자료 간 상관관계 분석”으로 한다.

제4조제2호다목 중 “전송 또는 제출자료의 이상유무 확인”을 “기타 지하수 수위·수량·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으로 한다.

제4조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제5조의 “자료의 보고”를 “분석결과와 보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체의 취수정 및 감시정으로부터 전송 또는 제출된 수량 및 수위 측정자료의 이상유무 등을 분석하고, 측정자료와 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를 “제5조에 따른 분석결과를 과업 종료 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수질·수량 측정 및 분석자료의 제출”을 “지하수 수위·수량·수질 측정결과 및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에 대한 추가 분석”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의한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 받은 경우”를 “의하여 보고받은 자료를”로, “사후 관리 용도이외”를 “관리·감독 용도 이외”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전문기관은 분석결과 등 자료 일체를 「지하수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입력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자료의 보관”을 “자료의 보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수집한 자료 : 5년 이상

제6조제2항 중 “취수정 및 감시정으로부터 전송 또는 제출받은 측정자료 중 수질·수량”을 “시·도지사에게 분석을 의뢰받은 지하수 수위·수량·수질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위·수량·수질”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전문기관에 수집·저장된 측정자료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의 수량 및 수질관리 용도 이외에는”을 “전문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자료의 일체를 분석 이외의 용도에”로 한다.

제7조 중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로 “6월30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분석의뢰)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과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자료 등의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1. 먹는샘물등 제조업체 인근의 지하수 수위가 하강하거나 하강이 우려되는 경우
2. 먹는샘물등 제조업체 인근의 지하수 수질 악화가 발생하거나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3. 허가받은 샘물등의 취수량을 초과하여 샘물등을 취수한 경우
4. 법 제41조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 제41조의2에 따른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제4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한다.